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맹진영 의원 대표발의)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079호
- 나. 제 출 자 : 맹진영 의원 외 15명
- 다. 제출일자 : 2016년 3월 30일
- 라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6일

## 2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 필요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의2)
- 나.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3조)

## 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한 확충과 강화에 대한 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중소기업지원시설에 기능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나.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법적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은 자치사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‘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’의 세부 영역으로 ‘중소기업의 육성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(제9조 제2항 제3호 타목)
- 한편,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3조 제2항)
- 또한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3조 제1항은 시·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의 제공, 기술지도, 공동전시판매장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(제63조 제1항) 서울시의 중소기업지원시설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음.

## 다. 서울시의 중소기업지원시설 현황
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(이하 ‘조례’라고 함)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지원시설의 명칭과 기능은 조례 별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소재지는 서울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3조).
-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‘서울신기술창업센터’, 중소기업제품의 전시와 판매 및 홍보 등을 담당하는 ‘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’ 등 총 8개임.

### <별표>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 명칭 및 기능	
(제3조 관련)	
명 칭	기 능
서울신기술창업센터	중소기업 창업지원
삭제(2005.04.14)	
삭제(2005.04.14)	
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	중소기업제품의 전시·판매 및 홍보 등
서울애니메이션센터	애니메이션산업 육성·지원
서울패션디자인센터	패션산업 육성·지원
서울인쇄센터	인쇄산업 육성·지원
서울디자인센터	디자인관련 연구 및 개발 등
서울무역전시장	중소기업제품 전시·홍보
DMC첨단산업센터	DMC단지 활성화 및 기업 지원

- 또한 조례 제5조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현재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, 서울인쇄센터 등이 민간위탁 중임.

- 한편, 2000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중소기업지원시설들의 현황과 별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재지를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실시하고 있어 추후에 중소기업지원시설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- 디자인센터의 경우 2013년 2월에 위탁업무가 종료되고 디자인재단으로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센터의 운영이 종료하였음.

## 라. 종합의견

- 개정안 제2조의2는 서울시장에게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(제1항)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확충·강화를 위한 노력(제2항)을 규정한 것으로, 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실시하도록 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 제2항 등에서 법적 근거가 충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### <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2조의2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 및 관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·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- 또한, 개정안의 제3조 제2항은 현재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중소기업지원시설들에 대한 기능들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신설규정임.
- 아울러 이 규정은 향후 설치되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창업, 제품의 판로지원 등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제고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**<조문대비표>**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) ①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<u>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</u> 2. <u>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</u> 3. <u>중소기업 관련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</u> 4. <u>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</u> 5. <u>중소기업 관련 설명회·상담회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</u> 6. <u>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.
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고시한다.	